전동차 내 홍보물 부착 계획

6월 23일부터 시행되는「철도안전법」제47조43항에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용고객에게 홍보를 진행하고자함

❖관련근거

1.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-3277호(2021.06.14.)『철도안전법 개정 시행 알림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)』
2. 안전계획처-4541호(2021.06.15.)『철도안전법 개정 시행 알림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) 및 관련부서 자료제출 요청』

□ 추진배경

○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 알림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)

- 시행일자: 2021. 06. 23(수)
- 정비대상: 1~8호선 배속 전동차
- 추진방법: 한 량당 2개소 안내물 부착

□ 추진개요

○ **발 주 명**: 전동차 객실 내 홍보물 부착

○ **정비대상**: 404개 편성, 4,531량(1~8호선)

○ **예상견적**: 금38,841,000원(금삼천팔백팔십사만일천원)

- 예산과목: 전동차량 상시보수/〔매〕수선유지비/전동차
- 안내물 제작 견적: 금21,186,000원(금이천일백일십팔만육천원정)
- 안내물 부착 견적: 금17,655,000원(금일천칠백육십오만오천원정)

□ 향후계획

○방침서 기안 약 1주 소요예정

○일반경쟁 입찰 계약 시 행정처리 기간(약 31일)

- 사전공고 5일, 입찰공고 7일, 서류제출 3일, 적격심사 3일, 계약체결 기한 10일

○ 계약 체결 후 정비기간(약 4주 소요예정)

- 스티커 제작 1주, 부착기간 3주 소요예정